

등록번호	시장경제과-54443
등록일자	2014.12.18.
결재일자	2014.12.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경제진흥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배경미	김창배	이재호	이제영	전결 12/22 김찬곤
협 조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상공인에 경영자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용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 일반현황

□ 기금조성 현황

- 기금총액 : 20,704백만원 (전출금 10,900백만원, 이자수입 9,804백만원)
- 연도별 조성내역 (단위 : 백만원, '14.11.30.기준)

구분	총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0,704	11,008	474	1,783	534	529	457	1,532	481	506	528	509	505	497	523	503	335
기 전 출 금	10,900	8,800	-	1,000	-	-	-	1,100	-	-	-	-	-	-	-	-	-
증 시 자	9,804	2,208	474	783	534	529	457	432	481	506	528	509	505	497	523	503	335

※ 서울시 자치구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총액	41	207	98	188	83	120	100	54	73	104	94	80	65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평균
총액	118	124	142	133	112	130	156	71	110	240	110	67	112

-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 규모
- 자치구 평균 : 112억원 [최대 240(강남), 최소 41(종로)]

□ 연도별 용자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자건수	1,238	218	62	45	50	62	40	53	66	69	73	62	121	123	97	97
용자액	93,864	16,704	6,717	5,375	4,067	5,205	4,234	4,380	6,954	6,373	5,106	5,283	5,471	6,336	5,573	6,086

□ 2014년 용자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획	접 수 결 과		심 의 결 과		용 자 실 행		집행률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1/4분기	2,500	42	2,970	41	2,714	20	1,288	47%
2/4분기	2,500	76	5,625	49	3,712	37	2,365.5	64%
3/4분기	1,200	79	6,980	35	2,800	24	1,975	71%
4/4분기	1,200	60	4,360	25	1,758.5	24	1,070	진행중
계	7,400	257	19,935	150	10,984.5	105	6,698.5	

□ 연도별 상환기간 및 금리현황

연 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금리	비 고
1993년 ~ 1999년	1년	3년	8%	
2000년 ~ 2001년	1년	3년	6%	
2002년 ~ 2003년	1년	3년	4.8%	
2005년	1년	4년	4%	
2006년 ~ 2010년	1년	4년	3.8%	
2011년	1년	4년	3.5%	
2012년	1년	4년	3.2%	
2013년 ~ 2014년	1년	4년	2.8%	
2015년	1년	4년	2.5%	

※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금리

(단위 : %)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 리	2	2.5	2	3	2.3	3	3	2	2	2	2.3	3	3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평균
금 리	2.8	2.3	2.5	2.8	2.8	2	2	2	2.5	2.5	2	2.5	2.4

- 우리구는 자치구 평균보다 0.1% 높음
- 금리 2%인 자치구 최다(9개 자치구)

금 리	2%	2.3%	2.5%	2.8%	3%
자치구수	9	3	5	3	5

II 용자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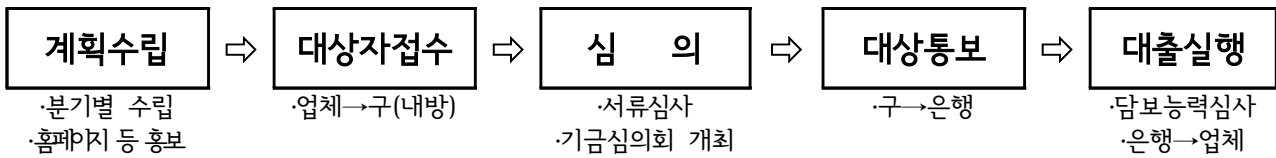
- 용자규모 : 77억원
- 용자시기 : 분기별 1회 (연 4회)
 - 1/4분기(1월말), 2/4분기(4월말), 3/4분기(7월말), 4/4분기(10월말)
 - 용자접수 : 매분기시작 전월 마지막주 ~ 분기시작월 첫주(2주간)

○ 용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원액(안)	7,700	2,500	2,500	1,400	1,300

- 전분기 지원 후 잔액 발생 시 다음분기로 이월하여 집행
- 분기별 이월액을 감안,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 용자대상 :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내 공장등록업체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도시형공장을 운영하는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 용자조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
 - 대출금리 연 2.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최근년도 매출액의 1/4 한도 (업체당 최고 2억원)
 - ※ 매출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창업기업 등)는 3,000만원 이하 한도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필수
- 대상업체 선정
 - 매출규모, 기술인력 확보, 우대가점 등 제출서류에 대한 예비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및 순위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 및 용자금액 결정

○ 용자절차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연 4회)
- 위원회 구성 : 11명
 - 위 원 장 : 기획재정국장
 - 부위원장 : 시장경제과장
 - 위 원 : 5급이상 소속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외부위원 5명
- 심의내용 : 분기별 용자대상 및 용자금액 결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주기 변경

- 시행시기 : 2015년 1월부터
- 대출금리 : 연 2.8%(2014년) → 연 2.5%(2015년)
- 상환주기 : 분기별 상환(총16회) → 월별 상환(총48회)
- 추진방법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과 기금운용약정 체결

□ 영세 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기금 출연

- 출연시기 : 2015년 1월
- 출연금액 : 1억원 (※기존 6억원 출연)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과 보증지원협약체결 후 기금출연
- 출연효과
 - 출연금 대비 10배수 규모로 특별보증 추천
 -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으로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보증수수료 2%→1%)
 -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적용없이 추천된 금액 보증
 - 3개월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특별보증 (※원칙적으로 보증취급 불가)

□ 특별신용보증추천제 운영

○ 추천대상

-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응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기술력과 사업성은 유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하

○ 추진방법

- 구 :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
- 재단 :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행
- 업체 :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우리은행에 응자 신청

Ⅲ 홍보계획

- 중구광장, 지역언론,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재
-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 안내
- 중구상공회 홈페이지 및 회원사 홍보

Ⅳ 행정사항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과 기금운용약정 체결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과 신용보증지원협약 체결 및 기금출연

❖ 첨 부

【별첨1】 금리인하(2.8%→2.5%)에 따른 약정서 변경(안) 1부

【별첨2】 기금 추가출연(1억원)에 따른 협약서 변경(안) 1부

【별첨1】

『서울특별시 중구 - (주)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 (주)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청 - (주)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와 (주)우리은행 중구청지점(이하 “지점”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구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말한다.
2. “대여” 라 함은 “중구” 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점” 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대출” 이라 함은 “지점” 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원칙)

- ① “지점” 은 “중구” 가 정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구” 가 정하는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하고 조례,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점” 의 대출관련 제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지점” 은 “중구” 가 제1항의 기준을 변경하여 통보한 때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 ③ “중구” 는 중소기업체로부터 기금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업체를 “지점” 에 통보한다.

- ④ “지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구”가 통보한 용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용자하여야 한다. 다만 “중구”가 통보한 용자대상자가 “지점”의 대출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용자 불가능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지점”이 차입한 기금(이하 “대여기금”이라 한다)은 “지점”의 책임 하에 운용되며 이에 따른 손익은 “지점”에 귀속된다.
- ⑥ “지점”은 자금운용에 있어 “중구”가 제시한 대여금 상환조건과 차주의 대출금 상환조건을 일치시켜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 ① “지점”은 “중구”의 기금대여 내용 통보에 따라 용자대상 업체에게 건별로 인출하여 용자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구”는 본 기금의 예치 및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대여 및 차입)

- ① “지점”은 “중구”가 통보한 용자대상 업체에 기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용자취급 예정일 3일(영업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대여 신청서를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구”가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대여의 뜻을 “지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점”이 기금을 수령한 때에는 “중구”가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차용증서 및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점”은 용자대상 업체의 신청사항에 대해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취하보전 조치만을 취한 후 대여신청 하여야 한다.
- ④ “지점”은 차입한 대여금을 대여일에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여일로부터 5일(영업일)이내에 대출하여야 한다.

제5조(원리금 상환)

① “지점”은 차주로부터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여기금 원리금을 “중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일 전까지 “중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원 금 : 거치기간 경과 후 연 12회 균등분할상환

2. 이 자 : 1개월 단위 후취

② “지점”은 대여기금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대출불능 자금과 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 원리금을 사유발생 즉시 “중구”에 서면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때 상환일까지의 이자는 “중구”의 대여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1. 대출불능자금 : 대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경과시는 대여기금 이자율에 1.0%를 가산 적용하여 “중구”의 계좌에 상환하여야 한다.

2. 기한전 상환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원리금 :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③ 전 ②항에 의한 사유로 대여금 일부를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할부금 기일 도래순으로 회수한다.

④ 대여원리금 납입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한다.

제6조(기금의 이자 및 상환원금의 계산방법)

①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단수는 초회에 가산한다.

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이를 버린다.

③ 대여이자의 계산은 대여된 날로부터 납입하여야 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되 1년을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한다.

④ 원금상환시 납입하는 이자는 대여일 또는 전납입일 익일부터 납입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여일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 ① 본 기금에 의한 대출금리, 융자금액은 “중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여금리는 대여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1. 대여금리 : 연 1.7%
 2. 대출금리 : 연 2.5%
- ③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후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④ 대여비율 : 100%

제8조(기금의 구분계리)

“지점”은 “중구”로부터 대여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사후관리)

- ① “지점”은 차입한 대여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경우 차주로부터 잔여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완제전 차주가 폐업하는 경우
 2. 융자금 완제전 영업장 대표가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융자금 완제전 차주가 영업장을 서울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 ② “지점”은 대여기금을 대출실행 후 차주가 타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금과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지점”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전 제5조 제②항에 정한 기일까지 “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이자는 차감한다.

제10조(보고)

- ① “지점”은 매월 말일 현재 기금 운용사항을 익월 10일까지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점”은 “중구”로부터 이 약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와 용자업체에 대하여 “중구”가 실태조사를 행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

- ① 이 약정은 “중구”와 “지점”의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의 해석에 있어서 “중구”와 “지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해 결정한다.

제12조(약정의 효력)

- ① 시행일 : 이 약정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② 적용범위 : 이 약정의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업체부터 적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중구”와 “지점”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주)우리은행 중구청지점장
김승세 (인)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신청서

2015.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기업체명	구분	대여신청액	이자율	상환기간	용자취급 예정일	비고
합	계					

※ 대출 취급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

1. 차용금액 :
2. 업 체 명 :
3. 대 표 자 :
4. 기금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5. 상환조건 : 5년(1년거치후 4년 균등분할상환)
6. 이 자 율 : 대여금리 연1.7%, 대출금리 연2.5%
7. 기타사항 : 기타조건은 대여약정서의 제조건에 따르며 대여조건이 추후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8. 대여금 상환계획

회수	상환일시	상환금액	상환후잔액	회수	상환일시	상환금액	상환후잔액
1				25			
2				26			
3				27			
4				28			
5				29			
6				30			
7				31			
8				32			
9				33			
10				34			
11				35			
12				36			
13				37			
14				38			
15				39			
16				40			
17				41			
18				42			
19				43			
20				44			
21				45			
22				46			
23				47			
24				48			
				계			

※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 분할상환금에서 가산한다.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 계획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차용인 :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 수 증

금 〇〇〇〇원정
(₩ 00,000,000)

위의 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용금조로 영수함.

2015. . .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첨2】

서울 중구 출연금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중구의 출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 중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 중구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가 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중구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용보증”이라 함은 서울 중구 내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증사고”라 함은 중구가 추천하여 재단이 신용보증한 건 중에서 보증부 대출금의 원리금 연체, 당좌부도, 신용관리정보대상 등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해 사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보증사고정상화”라 함은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 ④ “보증사고순증액”이라 함은 보증사고발생금액에서 보증사고정상화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⑤ “정상상환금액”이라 함은 보증부 대출금이 보증사고사유의 발생 없이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
- ⑥ “보증추천”이라 함은 보증 신청한 업체 중에서 중구가 재단에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납부) ① 중구는 재단에 그간 출연한 6억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며, 이후에도 추가 출연하는 경우에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② 중구는 출연금 납부를 재단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한 후 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계좌명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좌번호	6*****-013 (기업은행)

③ 재단은 중구의 출연금 납부내용을 확인한 후 출연금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 중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보증추천총액한도) ①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중구 출연금의 10배 수 범위 내로 한다.

② 중구가 보증 추천할 수 있는 보증한도 여유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text{보증한도여유액} = \text{출연금의 10배수금액} - \text{보증실행금액} - \text{보증사고순증액의 2배수금액} + \text{정상상환금액}$$

③ 중구의 추천으로 재단이 신규보증을 지원할 때에는 서울 중구 내에 소재 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장이전 등으로 서울 중구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의 총액한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중구와 재단은 제1항의 총액한도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한다.

⑤ 재단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5조(보증추천 및 심사우대) ① 중구는 서울 중구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재단에 “<별첨>”의 신용보증추천서로 보증 추천을 통지하면, 재단은 중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업무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중구의 보증추천은 신규보증에 한하고, 기추천한 보증에 대한 기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추가 추천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재단은 중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에 있어 우대하기로 한다.
- ③ 중구가 신용보증을 추천한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하기로 한다. 이때 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그 요청사항에 대해 중구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업무협조) ① 중구는 보증추천한 기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제공 요청하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재단은 중구가 보증추천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구에 제출하기로 한다.
- ③ 재단은 분기별 보증실행내역과 보증한도여유액을 매분기말일 중구에 통보하기로 하며, 통보서식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중구에 통보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중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변경)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구와 재단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기로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이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2. 이 협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이 협약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
 4. 중구와 재단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어느 일방이 이 협약재단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정하여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구와 재단의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은 중구로부터 출연금이 재단에 최초로 납부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위 협약의 증거로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중구와 재단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5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 진 섭 (인)

<별첨>

특별신용보증추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추천번호 :

추 천 대 상 기 업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핸드폰번호			
	업종			
보증추천금액				
특기사항 (추천사유 등)				

위의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추천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인)

담당자 ○○○ (☎ xxxx-xxxx)